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4 선고 2021가단31819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주식회사 C

2. 주식회사 D(전 주식회사 E)

변 론 종 결 2022. 4. 6.

판 결 선 고 2022. 5. 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,209,576원 및 그 중 90,232,390원에 대하여 2021. 6. 3.부터 2021. 12. 5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가. 피고 주식회사 C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나. 피고 주식회사 D :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92,209,576원 및 그 중 90,232,390원에 대하여 2021. 6. 3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1. 12. 5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은, 피고 주식회사 C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발생한 것이므로,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,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.

판사 윤희찬

별지